

[서식 예]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

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

청 구 인 1. 박 ○ ○ (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2. 이 ○ ○ (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

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

청 구 취 지

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○ ○ ○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.
- 2.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 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협의하였고, 성년후견인 ○ ○ ○도 양자가 되는 것에 동의를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니,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



- 기 바랍니다.
- 3. 성년후견인의 동의거부 시 그 사유 :
- 4. 피성년후견인의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:
 - □ 부모의 소재 불명
 - □ 동의 거부 : 사유

첨 부 서 류

1. 가족관계증명서(청구인, 사건본인)	각 1통
2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	1통
3.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(사건본인)	1통
4. 입양동의서(피성년후견인의 부모, 성년후견인) 및 인감증명서	각 1통
5. 기타(소명자료)	○통

2013 . 0. 0.

위 청구인 〇〇〇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(지방법원, 지원)
비 용	・인지액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청구인 수×3,700원(우편료)×8회분
기 타	 ·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민법 제873조제2항, 제867조제1항) ·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, 입양의 동기, 양부모(양부모)의 양육능력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민법 제873조제2항, 제867조제2항)